

의안번호	2200750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08.16.
추계번호	24D113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변경하여 지정 범위를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166억 1,300만원(연평균 33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3,323	3,323	3,323	3,323	3,323	16,613	3,32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을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시할 때 도시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 비도시지역의 경우 촌락의 생활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안 제5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영향도를 측정하여 소음대책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표 2]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소음영향도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군용비행장	WECPNL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0 이상 90 미만
소형화기 군사격장	dB(A)	82 이상	77 이상 82 미만	69 이상 77 미만
대형화기 군사격장	dB(A)	94 이상	90 이상 94 미만	84 이상 90 미만

주: 제3종 지역의 경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소재 군용비행장 및 이 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행장은 85이상 90미만임

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소음피해 보상금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1종 월 6만원, 제2종 월 4만5천원, 제3종 월 3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군사격장의 실제 사격일수, 소음대책지역으로의 전입시기, 근무지의 위치, 주민이 실제 거주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음¹⁾

[표 3]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단위: 원)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합계
보상금 기준금액		월 6만원	월 4만5천원	월 3만원	—
1인당 월평균 보상금 실지금액	2022	36,086	26,932	17,617	20,283
	2023	36,803	27,799	18,151	20,096
	평균	36,445	27,365	17,884	20,595

주: 1. 군사격장의 사격일수가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사격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1/3 지급, 사격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2/3 지급, 사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상금 전액 지급

2.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근무지의 위치, 주민이 실제 거주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함

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소음피해 보상금은 보상금 인상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5년간 보상금 단가는 동일하다고 가정

○ 구역별 보상금 기준금액에서 사격일수,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 후의 1인당 월평균 보상금 실지금액은 2022~2023년 평균 2만 595원으로, 향후 5년간 월평균 보상금 단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현행 소음대책구역에 따른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인원은 향후 5년간 2022~2023년 평균 지급인원과 동일하다고 가정

1) 군사격장의 사격일수가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사격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1/3 지급, 사격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2/3 지급, 사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상금 전액 지급하고 있음. 또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근무지의 위치, 주민이 실제 거주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음

[표 4]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지급인원

(단위: 명)

		2022	2023	2022~2023 평균
현행	제1종	19,181	17,512	18,347
	제2종	99,555	87,888	93,722
	제3종	361,901	321,020	341,461
	합계	480,637	426,420	453,52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변경에 따른 인구 변화율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2023.1월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지역은 2018.5월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과 비교하여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경계설정 기준이 본 개정안과 유사하게 변경되었음²⁾
-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용 상의 기준변경 전·후 인구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의 경계지역 기준 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인구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2023.1월 소음대책지역 고시는 이전과 비교하여 소음영향도 단위를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변경, 소음 실측값의 변화, 향후 항공수요 예측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동 개정안과 차이가 있음. 그러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항공기소음 단위를 가중 등가소음도(LdendB(A))로 하고 있다는 점, 다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내용을 활용하여 추계함

[표 5] 「공항소음 방지법」 상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변경 전후 인구 비교

(단위: 명, %)

공항	변경 전 (18.5월 고시)	현재 (23.1월 고시)	증감(%)
김포	184,987	182,983	-1.1
김해	3,641	3,891	6.9
제주	22,805	31,207	36.8
울산	372	4	-98.9
여수	8	7	-12.5
합계	211,813	218,092	3.0

주: 2023년 1월 고시에서는 소음영향도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변경되었는데, 웨클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 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하여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LdendB(A)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하여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저녁 +5dB, 야간 +10dB)하여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한 것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법안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기준 변경(안 제5조)

- (단가) 2022~2023년 실지금액 평균을 고려한 소음대책지역의 월평균 구역별 보상단가는 제1종 36,445원, 제2종 27,365원, 제3종 17,884원임

[표 6]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지급단가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제1종	36,445	36,445	36,445	36,445	36,445
제2종	27,365	27,365	27,365	27,365	27,365
제3종	17,884	17,884	17,884	17,884	17,88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됨

- (지급인원) 개정안에 따라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지역 기준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인구수가 3.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총 지급인원은 매년 46만 6,973명인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보상금 지급인원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제1종	18,890	18,890	18,890	18,890	18,890
제2종	96,500	96,500	96,500	96,500	96,500
제3종	351,583	351,583	351,583	351,583	351,583
합계	466,973	466,973	466,973	466,973	466,973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변경하여 지정 범위를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166억 1,300만원(연평균 33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현행	제1종	8,024	8,024	8,024	8,024	8,024	40,118
	제2종	30,777	30,777	30,777	30,777	30,777	153,884
	제3종	73,280	73,280	73,280	73,280	73,280	366,402
	합계(A)	112,083	112,083	112,083	112,083	112,083	560,414
개정안	제1종	8,261	8,261	8,261	8,261	8,261	41,307
	제2종	31,689	31,689	31,689	31,689	31,689	158,446
	제3종	75,453	75,453	75,453	75,453	75,453	377,264
	합계(B)	115,405	115,405	115,405	115,405	115,405	577,027
추가재정소요(B-A)		3,323	3,323	3,323	3,323	3,323	16,613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